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33-01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 • •
유럽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북**



Contents / 목차

1. 서론

2. 특징

2.1 유럽연합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04

2.2 체크리스트 / 07

2.3 심사 실무에서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 / 08

2.4 특이사항 / 10

2.4.1 선수위 / 10

2.4.2 검색 보고서 / 11

3. 절차

3.1 심사과정 / 12

3.2 항소 / 14

3.3 대리 원칙 / 15

3.4 수수료 / 18

4. 심사의 핵심 포인트

4.1 상품분류 / 19

4.2 절대적 거절이유 / 24

4.2.1 차별성 / 24

4.2.2 기술성 / 25

4.3 상대적 거절이유 / 29

5. 변경 대응

5.1 기한 연장 / 34

5.2 가상 상품에 대한 상품 분류 / 35



01

1. 서론

Introduction

본 웰컴키트는 유럽연합상표(EUTM¹) 제도와 획득 요건을 한국 중소기업에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글로벌 온라인 마켓 등 국경 없는 비즈니스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IP)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지가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본 키트는 한국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심사 요건을 이해하고 유럽 시장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대리인과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키트는 이런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웰컴키트의 구성

	특징	절차	심사의 핵심 포인트	변화대응
모듈	주요 차이점 & 특이 제도	절차 관련 정보	실무상 핵심 거절이유	변화대응 방법



본 문서는 'TM5²' 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키트는 EUIPO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의 핵심 포인트' 장에서는 주된 거절이유를 중심으로 주요 사례와 예시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한국 출원인이 유럽연합상표를 정확하게 출원하기 위해서는 본 웰컴키트 뿐만 아니라 최신 가이드라인 원본도 참고하여 유럽 대리인의 법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www.euiipo.europa.eu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1 2016년 3월 23일자로 유럽공동체 상표(CTM: Community Trade Mark)가 유럽연합 상표(EUTM)로 명칭이 바뀜
- 2 TM5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5대 지식재산청(KIPO, CNIPA, EUIPO, JPO, USPTO)으로 구성된 다자협력포럼

02

2. 특징

Features

2.1 유럽연합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은 어디에?

EU에서는 사업의 니즈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 회원국의 상표청을 통한 국내 등록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을 통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아우르는 지역 등록 포함)
- EUIPO를 통한 등록으로 EU 전역(모든 EU 회원국)에서 보호
- WIPO를 통한 국제 등록



본 제도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운영됩니다.

1. 유럽루트로 유럽연합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모든 EU회원국에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원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온라인 출원 비용은 € 850이며 하나의 언어로 작성됩니다. EUIPO는 출원서가 접수되면 수리하여 심사하고, 상표 등록 후 10년마다 무기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EU 회원국에서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에 현재 사업 기반이 있거나 진출 예정 국가에서만 보호를 원하는 경우 등 EU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상표와 지역차원의 상표가 적합합니다. 국내루트로 해당 국가 상표청에 직접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상표청 전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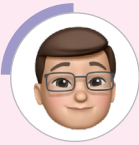
3.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보호를 원하는 경우 EU에서 유일한 지역 지식재산청인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루트입니다.
4. EU에서 보호받기 위한 마지막 경로는 국제 루트입니다. 기존의 국내, 지역 또는 유럽연합상표 출원을 기반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의 모든 체약국까지, 보호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상표 등록의 이점

- 한 개 언어로 온라인 신청하는 단일 등록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 상표 하나만 유지,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 유럽연합상표는 소유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재의 EU가입국 전체 뿐만 아니라 장래 가입국에도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EU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만 실제로 사용해도 모든 회원국에서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약 5억 명 시장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상표제도는 상표 소유권자에게 단일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통합 보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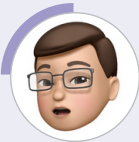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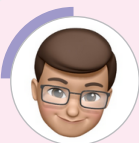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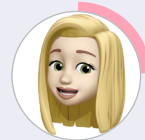
Q. 향후 유럽 연합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향후 유럽연합이 확대되면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기 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모든 유럽연합상표는 심사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회원국으로 확대됩니다.



Q. 유럽연합상표를 출원하는데 이미 유럽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유럽연합상표와 국내 상표를 통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두 상표는 계속 공존합니다. 단, 두 상표가 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국내 상표의 선순위를 주장하여 권리는 유지하면서 국내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Q. 유럽연합상표를 국내 상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EUIPO에서 등록을 금지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 상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2 체크리스트

성립요건	YES	NO
전략		
전반적인 IP 포트폴리오 전략에 적합한가요?	☐	☐
한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유럽연합 상표제도와 한국 상표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미리 확인했나요?	☐	☐
유럽 연합 상표		
식별력이 있으면서 기술적(descriptive)이지는 않나요? 판단은 국가(27개 회원국) 및 언어(23개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당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나요? 77개 지식재산청의 1억 7백만 개 이상의 상표가 등록된 EUIP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TMview 를 참고하길 권장합니다.	☐	☐
상품 및 서비스		
판매하려는 상품,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했나요?	☐	☐
통합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여 해당 목록이 유효한지 확인했나요?	☐	☐



2.3 심사 실무에서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

	유럽연합 상표	한국 상표
출원일	31(1)조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원인이 EUIPO에 제출한 날(해당 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함)	상표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
선순위	○	×
검색보고서	○	×
심사 범위	방식, 분류, 절대적 거절이유	방식, 분류, 절대적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거절 사유	절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심사하며, 공고 후 등록전까지 제3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함 상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심사. 심사관은 선행 상표를 반드시 검색해야 함
면책(Disclaimer)	×	×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거 범위: 상대적 거절이유 * 출원인은 상대방에게 5년 이상 등록된 선행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사용 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	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근거의 범위: 모든 거절이유 * 누구나 공식 이의신청 가능
출원/등록의 분할	○	○
등록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설정일로부터 10년

	유럽연합 상표	한국 상표
갱신기간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 추가 수수료 납부 시 만료 후 6개월 이내	보호 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 추가 수수료 납부 시 만료 후 6개월 이내
양도	유럽연합상표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의 양도와 상관없이 양도할 수 있음 유럽연합상표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판결에 따른 경우 제외) 유럽연합상표의 단일성은 양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유럽연합상표가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양도는 없음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양도 가능. 이런 경우 유사 지정상품은 일괄 양도하여야 함 상표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공동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사용 요건	등록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음	취소 청구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음



2.4 특이사항

2.4.1 선순위(Seniority)

국내 선행 상표의 선순위란 무엇이며 선순위 주장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럽연합상표 출원인 또는 소유권자가 하나 또는 여러 회원국에서 같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국내 또는 국제 선행상표를 이미 등록한 경우, 출원 후 2개월 이내 또는 유럽연합상표 등록 후 언제든지 선행 상표를 갱신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상표 출원시 해당 상표에 대해 선순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 주장은 선행출원이 아닌 선행등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출원인이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주요 무역국에서 상표를 등록한 뒤, 이들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상표 보호를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주장으로 유럽연합상표 소유권자는 선행상표를 포기하거나 소멸시켜도 선행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각기 다른 국가별 상표 등록부를 따로 감독할 필요도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확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상표의 우선권 날짜를 출원일로 지정합니다. 선순위 주장의 경우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유럽연합상표의 출원 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4.2 검색 보고서

검색 보고서란?

EUIPO는 기존 선행 권리와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상표의 출원을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된 유럽연합상표와 충돌할 수 있는 선행 유럽연합상표 및 선행 출원을 파악한 검색 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전송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출원인에게 유럽연합상표 출원이 공고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검색 보고서는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출원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 출원의 경우 WIPO의 국제 등록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U 검색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권리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출원보다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앞선 유럽연합상표 출원
2. 선등록 유럽연합상표 및
3. EU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선국제등록(IR).

또한, 추가 수수료60유로를 납부하면 5개 유럽연합 회원국 상표청(체코 공화국, 덴마크, 헝가리,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의 국내 검색 보고서를 EUIPO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출원서 제출 전에 출원인이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선행상표는 출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검색 보고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보고서는 정보 제공용일 뿐이며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행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EUIPO의 두 가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eSearch plus** 및 **TMview**를 이용해 등록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무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Proceedings

3.1 심사과정

EUIPO의 심사는 서로 다른 전문 심사관들이 거의 동시에 진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를 공고하며, 출원 진행 상황은 **eSearch plus**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UIPO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이 출원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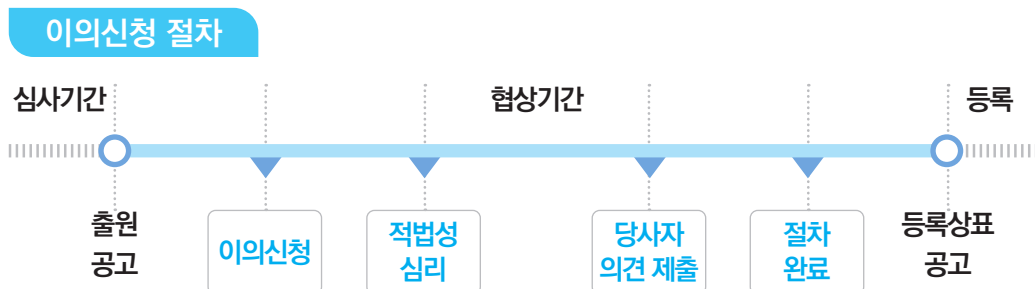
각 출원인에게 '소유자 ID 번호'가 자동으로 할당되며 상세 주소와 함께 게시됩니다. '갱신' 같은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세부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UIPO 심사 흐름도



- 출원일** 상표 출원서에 기본 필수 정보, 즉 출원 요청, 정확한 소유자의 신원, 상표의 명확한 표현, 상품 및 서비스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수수료도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방식** 출원서 세부내용, 즉 서명, 언어, 소유자 및/또는 대리인 정보, 우선권 및/또는 선행권 주장 등을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 상품과 서비스가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 성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1장 참조)
- 절대적 거절이유**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기술적(descriptive)이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4.2장 참조)
-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도 유럽연합상표 출원 거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국내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선행권리와 충돌로 인해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3자는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UIPO는 상대적 거절이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의신청 결정은 온라인에 게시되고 불리한 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 충돌이 없다면 EU 상표를 국내 등록으로 **전환(IP bridge)**할 수 있습니다.



3.2 항소

항소 자격

- 불리한 결정을 받은 누구나 항소할 수 있으며 상표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 비용은 € 720입니다.

항소 기한

- 항소 통지서와 사유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위원회/일반법원 결정

- 항소위원회 결정은 결정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원의 모든 판결은 EU사법재판소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단,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3 대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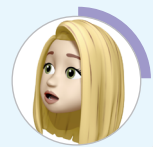
대리인 지정은 EUIPO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 중 EU 회원국이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유럽경제구역에 주소지, 주요 영업장, 사실상 실질적인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규정은 EUIPO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해당됩니다. 유럽연합상표 출원서 제출 자체는 대리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추가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³

Q&A



Q. 한국 회사와 교역관계에 있는 유럽회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네. 다만, 유효한 경제적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⁴



한국에 기반을 둔 출원인이 EUIPO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경우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그 회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경제구역 밖에 법적 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는 대리인 지정이 의무입니다. 이런 비유럽경제구역 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³ 이는 EU를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국제등록도 마찬가지임

⁴ 절차 당사자와 전문 대리인

1. 유럽경제구역 밖에 법적 주소가 있는 법인이지만 유럽경제구역 내에 사실상 실질적인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이 있는 경우 유럽경제구역 소재 시설의 직원이 EUIPO 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대리 법인은 자신의 법적 주소는 유럽경제구역에 있지 않더라도, 유럽경제구역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비유럽경제구역에 소재한 법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유럽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지점, 대리점 또는 그 외 상업 시설(자회사 포함)을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유럽경제구역 밖에 법적 주소가 있는 법인들은 유럽경제구역에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법인은 경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법인은 다른 법인이 유럽경제구역 내에 있다는 것, 둘째, 피대리 법인과 유럽경제구역에 있는 다른 법인과 충분히 밀접한 경제 관계가 있다는 것, 셋째, 대리인으로 지정된 직원이 실제로 유럽경제구역 소재의 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관계는 양 법인 사이에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즉, 절차 당사자가 해당 직원의 고용주에 의존적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제적 견련 관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법인이 같은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또는,
- 경영관리 매커니즘이 있는 경우⁵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경제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관계,
- 상호 대리 또는 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두 기업의 계약에 의한 관계
- 단순 공급자/고객 관계(예: 독점 총판 또는 가맹점 계약 등)

5 (22/09/2016, T-512/15, SUN CALI (fig.), EU:T:2016:527, § 33 et seq.).

Q&A



Q. 대리인 지정이 의무인 경우에, 지정한 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EUIPO는 하자 통지를 합니다. 하자가 보정되지 않으면 출원서에서 대리인을 삭제하고 출원인에게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기타 유형의 대리인

- 유럽경제구역의 모든 회원국에서 법적 절차의 대리는 규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UIPO의 절차에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법률 전문가

- 국내법에 따라 각국 상표청에서 제3자를 대리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

전문 대리인

- 추가 조건을 준수하고 이런 목적으로 EUIPO가 관리하는 특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대리인



Q.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문 대리인 리스트는 EUIPO의 웹사이트 'eSearch plus' 섹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 직접 연락해서 선임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EUIPO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3.4 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EUIPO가 출원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상품류 한 개를 포함하는 전자출원 기본 수수료는 850유로
- 두번째 상품류에 대한 수수료는 50유로
- 3개 이상의 상품류에 대한 수수료는 상품류당 150유로



04

4. 심사의 핵심 포인트

Examination key



이 장은 심사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euipo.europa.eu에서 제공되는 EUIPO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 상품분류

상품분류란?

모든 유럽연합상표 출원은 출원일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은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각 상품류는 대표 명칭(Class heading)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상품은 1류에서 34류까지, 서비스는 35류에서 45류까지)

유럽연합상표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현재 및 향후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 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사전 승인 명칭이 포함된 **TMclass** (<http://tmclass.tmdn.org/ec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칭은 분류상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원활한 상표 등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류상 실수는 어떻게 피하나요?

정확한 구두점 사용

- 쉽표[,]는 유사한 범주 또는 표현 안에 속하는 서로 다른 항목을 구분하는데 사용합니다. 소매 서비스 상품은 항상 쉽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 35류 의류, 신발, 헤드기어와 관련된 소매업)
- 세미콜론[;]은 서로 관련 없는 독립적인 표현을 구분하는데 사용합니다. (예: 우유; 치즈; 사워 크림)

명확성, 정확성이 결합된 용어와 표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예: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니스 대표 명칭 및 기타 용어의 11가지 일반 명칭)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합된 명칭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
기계 (7류)	농업용 기계 (7류) 가공 플라스틱용 기계 (7류) 유축기 (7류)
귀금속으로 제작되거나 코팅된 상품 (14류)	귀금속 예술 작품 (14류)
종이와 하드보드지로 만든 상품 (16류)	종이 필터 자재 (16류)

가이드라인의 B장 심사, 3절 분류, 4장에서 더 많은 예를 참조하세요.

- '동종', '부속품', '연관 상품', '및 관련 상품', '기타' 등의 수식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화장품 및 관련 상품
- '부품 및 피팅' 및 '구성품 및 액세서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12류 자동차용 부품 및 피팅, 15류 악기 액세서리, 19류 목재로 만든 건축 부품은 제외합니다.



● ”즉”, ”특히” 사용

- 특정 상품 명칭으로 제한하는 '즉' 또는 '~한 것'. '특히', '포함', '특히', '주로'라는 용어는 예시 상품 중 하나만 나타냅니다.

명칭 예시	명칭의 범위에 대한 설명
유제품, 즉 치즈와 버터	치즈와 버터로 한정
유제품, 특히 치즈와 버터	치즈와 버터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지칭
의류 중 모든 속옷	속옷으로 한정
속옷을 포함한 의류	속옷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의류 지칭



-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B장 심사, 3절 분류에서 더 많은 예를 참조하세요.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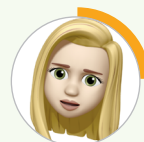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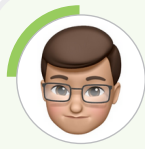
Q. 신속심사(Fast Track)란 무엇이며, 분류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A. EUIPO에서는 출원인이 신속심사(Fast Track) 조건을 갖춘 경우 신속하게 심사 받고 출원공고 될 수 있습니다.

1. 빠른 심사(소요 기간 절반 이하로 단축)
2. 더욱 안전: 통합 데이터베이스 (Harmonised Database)에서 EUIPO와 유럽 각국 상표청에서 이미 승인한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하자 감소

즉, 신속 심사 요건을 갖춘 출원서는 신속 심사로 분류되므로 출원인은 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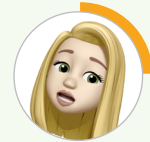
Q. 신속 심사 절차 조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통합 데이터베이스(**HDB** database)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선불로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만
심사에 착수합니다.

일부 출원의 경우 출원 시점에는 신속 심사 절차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Q. 통합 데이터베이스(Harmonised Database)란 무엇이며
유용성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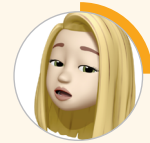
A. 통합 데이터베이스(HDB: Harmonised Database)는 EU 공통 상품
및 서비스 명칭 목록입니다.

23개의 모든 EU 공식 언어로 모든 회원국 상표청에서 사전 검증한
78,000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명칭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분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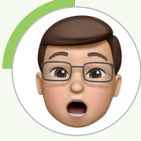
EUIPO 언어 전문가와 각 EU 회원국 상표청 분류 전문가가 검토하고
수정한 고품질의 용어가 수록 되어있습니다.

TM5 ID 목록, WIPO의 MGS 목록 등 국제 분류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도 포함하고 있어 EU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승인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HDB)를 이용하여 EIPO에 출원하면 신속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A



Q. 한국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나요?

A. 예. 국가별로 등록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M class 의 '번역 도구' 기능을 통해 한국어로 된 용어를 영어나 다른 유럽 공식 언어로 번역했을 때 허용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버전의 TM cla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class

분류 도구 • 분류 지원 • 번역 도구

검색 용어

언어: 한국어 (ko) | 검색 용어 (예: 우유) | NICE 용어: 1-45

사무소 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KIPO)

TMclas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Mclass 는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용어)를 검색하고 분류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번역한 다음 해당 용어가 아래 강조 표시된 참가 상표국의 분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국에 대한 링크:

표준화된 상표국

• EUIPO	• GFA	• AT	• PRH	• FI	• CO IPO	• MT
• GPO	• BG	• BPI	• BPI	• FR	• PPO	• PL
• BOP	• BX	• CSE	• CSE	• GR	• IMPE PT	• PT
• DRCTP	• CY	• SQPO	• HR	• HR	• GOSM	• RO
• IPO CZ	• CZ	• HPO	• HU	• HU	• PRV	• SE
• DPMH	• DE	• IPOI	• IE	• IE	• IPOIS	• RS
• DWPFO	• DK	• USBM	• IT	• IT	• SPO	• SI
• EPA	• EE	• VPS	• LT	• LT	• SKPO	• SK
• OEPM	• ES	• LRPV	• LV	• LV		

Harmonised (EEA, candidate & potential candidate countries)

• GOSP	• AL	• ISPO	• IS	• SOSP	• MK
• IEP BSH	• BA	• MEDM	• ME	• NIDPO	• NO

가타 상표국

• WIPO	• AIPCO	• AG	• RPI GT	• GT	• GARI	• DA
• IAPI	• AO	• AIP	• DCEP	• HH	• DCEP	• PA
• ARPO	• AP	• SPINCI	• HT	• HT	• INCECOP	• PE
• INPI AR	• AR	• ILPO	• IL	• IL	• IPOPHL	• PH
• IPA	• AU	• CGPOTM	• IM	• IM	• IPOIS	• RS
• BELIPO	• BN	• IPO	• JO	• JO	• ROPATENT	• RU
• INPI BR	• BR	• IPO	• JP	• JP	• USBM	• SH
• BELIPO	• BZ	• DIP	• KH	• KH	• SENAPQ-STPST	• SV
• CIPO - OPIC	• CA	• IPOGIN	• KN	• KN	• CNR	• TH
• IPT	• CH	• IPO	• KR	• KR	• DIP-TH	• TH
• INAPI	• CL	• DIP LAOS	• LA	• LA	• L INCECOP	• TN
• CNIPA	• CN	• ROCIP	• LC	• LC	• TURKIPATENT	• TR
• SIC	• CO	• OMPC	• MA	• MA	• TTPO	• TT
• INPCR	• CR	• MCPO	• MC	• MC	• URSS	• UG
• CCPI	• CU	• AGEP	• MD	• MD	• USPTO	• US
• ONAPI	• DO	• INPI	• MX	• MX	• MEEM-CHP	• UY
• SENADE	• EC	• MYPO	• MY	• MY	• CIPO - VC	• VC
• TIDO	• EG	• EIPA	• NA	• NA	• PACRA	• ZH
• NIPCO	• GE	• IPONZ	• NZ	• NZ		

4.2 절대적 거절이유

자주 인용되는 절대적 거절이유

자주 인용되는 절대적인 거절이유는 식별력 부족 (EU 상표규정 제7조(1)항(b)호)와 기술적인 (descriptive)상표 (EU 상표규정 제7조(1)항(c)호)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상표가 이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적 거절이유 전체 목록은 EUIPO 가이드라인의 [관련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1 식별력 (Distinctiveness)

EU상표규정 제7조(1)항(b)호에서 상표의 식별력이란 표장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가 특정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식별하는 역할을 하여 다른 기업의 상품,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EU상표규정 제7조(1)항(b)호에 규정된 절대적 이유에 의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별력만 있으면 됩니다.

식별력 없는 문자 상표의 예시

문자 요소

너무 자주 사용되어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단어
(예: BIO (바이오))

단순히 상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인 품질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예: PERFECT (퍼펙트))

슬로건

광고 슬로건은 관련 대중이 단순히 판촉문구로 인식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EU 상표규정 제7조(1)항(b)호) (예: “이것은 당신에게 완벽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단순한 광고 메시지 이상으로 보일 때는 식별력이 있습니다.

- 언어 유희에 해당
- 상상력이 풍부하고 놀랍거나 의외의 요소가 있음
- 인지 과정이 필요하거나 해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 식별력이 결여된 문자를 포함한 상품 모양 자체



상품 모양
자체



식별력이 결여된
문자를 포함한
상품 모양 자체

4.2.2 기술성 (Descriptiveness)

일반적으로 출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로 인지되는 표장은 기술적인(descriptive)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즉,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품질, 특징, 목적, 종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표가 기술적(descriptive)이면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단, 연상을 시키거나 암시적인 용어는 허용됩니다. 용어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충분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descriptive) 상표의 예

단순히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정보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 (예: 살아 있는 동물을 위한 의 "CONTINENTAL"), 기술적 (descriptive) 요소들의 조합(예: "CLEARWIFI")

도형 상표란 비표준 문자, 도식화, 레이아웃, 그래픽적 특징 또는 색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입니다(EU 상표규정 제3조(3)항(b)호). 도형 요소만으로 구성된 상표나 언어적 요소와 도형 요소가 결합된 상표가 해당됩니다.



도형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사용 목적 또는 기타 특징을 보여주는 실제 모양으로 본래의 기본적인 형태로만 구성된 경우 문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 **상표규정 제7조(1)항(c)호**에 따라 거절됩니다.

식별력이 결여된 사례

	08/07/2010, T-385/08, Hund, EU:T:2010:295		08/07/2010, T-386/08, Pferd, EU:T:2010:296
---	--	---	---

이 사례에서 법원은 18류와 31류의 상품에 대해 개와 말 이미지는 각각 상품이 사용될 동물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결했다.

도형상표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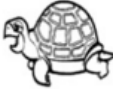
도형 상표가 기술적인 언어 요소와 도형적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표장의 도식화, 그래픽적 특징으로 해당 표장이 상품 출처 표시 역할을 할 정도로 충분히 식별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U 지식재산네트워크(EUIPN: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에서EUIPO와 상당수의 유럽연합 회원국 상표청은 식별력이 충분한 도형요소에 관한 공통 실무관행에 합의했습니다.(수렴 프로젝트3 또는 CP3 실무관행으로 지칭)



식별력있는 상표의 사례

아래는 상표의 도형 요소로 인해 식별력 기준을 통과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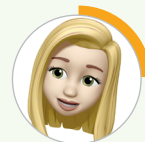
문자요소	
도형요소	 Flavour and aroma
문자와 도형 요소의 조합	 PEST CONTROL SERVICES

Q&A



Q. 절대적 거절이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참고 기준은 해당 단어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이는 사전에 등록된 단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기술적(descriptive)으로 사용된 용어의 사례로 입증하거나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의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심사에서 어떤 언어가 검토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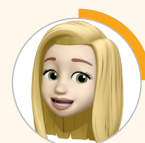
A. 절대적 거절이유는 유럽 공통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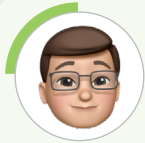
단, 거절이유가 EU의 일부 국가만 관련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EU 공식 언어 중 하나라도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됩니다.

심사 시 모든 EU회원국의 언어를 검토합니다.

EU지역의 일부에서 상당수(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관련 대중이 이해하는 기타 언어(지역 언어 및 비 EU 언어)로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 식별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거절됩니다.

EU의 공식 언어가 아닌 용어를 상당수(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관련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적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즉, (i) 문화적, 언어적 및 역사적 상황, (ii) 지리적 근접성, (iii) EU 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진 소수민족의 존재, (iv) 인용된 인물 또는 연구 등. 보통 흔히 사용되는 용어만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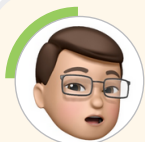
Q. 어떤 경우 준말과 약어를 기술적인(descriptive) 것으로 판단 하나요?

A. 기술적(descriptive) 용어의 준말이 기술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관련 대중이 해당 준말을 원래 용어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면 그 준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것으로 봅니다.⁶ 준말이 기술적(descriptive) 용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적(descriptive) 의미가 한눈에도 분명한 경우 상표는 거절됩니다.(예: 'Multi Markets Fund MMF' / 'The Statistical Analysis Corporation— SAC')

그러나 의미가 즉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약어는 식별력이 있습니다.(예: 'The Organic Red Tomato Soup Company — ORTS')



Q. 출원이 거절된 경우 국내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출원이 하나 또는 특정 국가에서만 기술적(descriptive)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또는 특정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로 인한 이의신청으로 거절된 경우, 충돌이 없는 회원국에서 EU 상표 출원을 국내 등록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⁶ (13/06/2014, T-352/12, Flexi, EU:T:2014:519).

Q&A



Q.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절대적 거절이유는 상표청이 직권으로 심사하고 (상표 무효에서만 절대적 거절이유가 되는 악의적 출원 제외) 제3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식별력 부족, 보통명사화 된 상표, 모양 또는 기타 특징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및 무효 소송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4.3 상대적 거절이유

가장 흔한 상대적 거절이유

(1) EU상표규정 제8조(1)항(b)호 - 혼동가능성

혼동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1. 대중이 충돌하는 상표를 직접적으로 혼동하는 경우, 즉 상호 오인하는 경우
2. 대중이 충돌하는 상표가 서로 관련 있고 문제의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관련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 (연관 가능성)

(2) 명성이 있는 상표

EU상표규정 제8조(5)항은 동일/유사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혼동가능성 없이 등록 상표를 보호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EU 상표규정 제8조(5)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행상표가 해당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경우
-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선행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불이익, 손상 또는 희석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공되어야 함)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선행상표의 명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적 거절이유 또는 거절의 전체 목록은 **EUIPO 가이드라인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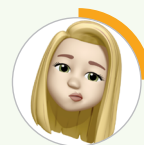


Q. 상대적 거절이유상 선행상표의 식별력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A. 선행상표 식별력은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행상표의 식별력은 혼동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서 고려요소입니다.

(i) 선행상표의 식별력이 강할수록 혼동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별력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거절이유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ii)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으로 인해 식별력이 강한 선행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약한 상표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습니다. 식별력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이의신청인은 대중의 상당 부분이 선행상표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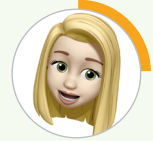


Q. EUIPO는 혼동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혼동 가능성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품과 서비스 비교 (구체적인 사례는 [EUIPO 유사성 도구](#) 참조)
- 관련 대중과 관심도
- 표장의 비교
- 선행상표의 식별력
- 기타 요소
- 혼동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시장에서 가지는 명성으로 인해 강력한 식별력을 지닌 상표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보다 더 폭넓은 보호를 받습니다.



Q. 상품과 서비스 비교에서 무엇을 검토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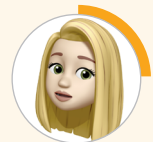
A. 일반적으로 두 항목이 비슷한 특징이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캐논’ 요소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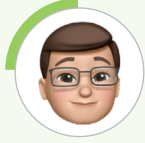
성격 / 사용 목적 / 사용 방법 / 상호보완성 / 경쟁

추가 요소

유통 채널 / 관련 대중 / 상품·서비스의 일반적인 출처

구체적인 사례는 EUIPO 유사성 도구([EUIPO Similarity Tool](#))를 참조하십시오.





Q. EUIPO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상표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A.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표의 시각적, 청각적,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상표의 식별력과 주요 요소를 염두에 두고 상표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판단 결과에 결정적일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의 유사성 정도로 비교합니다. 동일한 상품, 서비스라도 '유사성' 그 자체로는 혼동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UIPO는 유사성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낮은 요소가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성 요소의 식별력이 더 약하거나 (또는 비슷하게 약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미미하고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전반적인 인상이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UIPO는 유럽연합 지식재산네트워크에서 수립한 공통실무5 (상대적 거절이유 - 혼동가능성 (식별력 없는/미미한 구성 요소의 영향)의 원칙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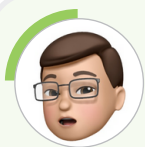
사례

- 공통 구성 요소의 낮은 식별력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기에 충분함

혼동가능성 없음	혼동가능성 있음
MORELUX vs. INLUX (44류: 미용관리)	COSMEGLOW vs. COSMESHOW (3류: 화장품)
 (9류: 신용카드)	 (43류: 휴가용 숙박 서비스)

- 식별력이 없는 공통 구성요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충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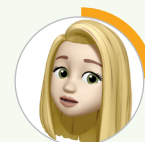
혼동가능성 없음	혼동가능성 있음
BUILDGRO vs. BUILDFLUX (19류: 건축 자재, 37류: 건설 서비스)	TRADENERGY vs. TRACENERGY (9류: 발전용 태양열 집열기)
 (36류: 금융서비스)	 (9류: 발전용 태양열 집열기)



Q. 등록 후에 리스크가 있나요?

A. 유럽연합상표 소유권자의 권리가 취소되거나(요청일로부터) 유럽 연합상표가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음(소급 적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 청구의 경우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사용 요건" 참조)을 근거로 하는 반면, 무효 청구는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 이유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05

5. 변화 대응

Change response

이 장은 사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조치 또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5.1 기한 연장

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 절차와 당사자간 절차(2명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서 연장 요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A장 총칙, 1절 커뮤니케이션 및 기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기한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COVID-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청장은 마감일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2 가상 상품에 대한 상품 분류

EUIPO는 가상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2023년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B장 심사, 3절 분류, 6.25장 '다운로드 가능한 상품 및 가상 상품'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여기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 상품 및 가상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EUIPO의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상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명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며, 구체화될 경우 해당 가상 상품은 제9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라는 용어 자체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용어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제42류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발행업'은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허용됩니다.
-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기본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본문의 링크는 “구버전”으로 표시된 가이드라인의 이전 버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단의 메뉴바에서 최신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dition 2022

Complete Edition ▼ Search trade mark guidelines Trade mark guidelines ▼ Edition 2021 ▼ English ▼

Trade mark guidelines

③ > 4 Figurative Threshold

Show modifications ☐

4.2 Assessment of the figurative threshold

The presence of figurative elements may give distinctive character to a sign consisting of a descriptive and/or non-distinctive word element so as to render it eligible for registration as an EUTM. Therefore, the question to be considered is whether the stylisation and/or the graphical features of a sign are sufficiently distinctive for the sign to act as a badge of origin.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EUIPN), the Office and a number of trade mark offices in the European Union have agreed on a Common Practice in relation to when a figurative mark, containing purely descriptive/non-distinctive words, should pass the absolute grounds examination because the figurative element renders sufficient distinctive character (also referred to as Convergence Project 3 or CP3 Practice) ().

• • • • •
유럽에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북**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특허청장 이인실

발행처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특허청



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BN: 979-11-6884-114-7 13500

DOI: 10.8080/P9791168841147